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691호 2023. 10. 04.(수)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예 규】

- 고창군 예규 제14호 고창군 상품권 구매·관리에 관한 지침 1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3-140호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3-1795호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입법예고 10
- 고창군 공고 제2023-1808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5

회 람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행정지원과 ☎ 063-560-2326)

고창군 상품권 구매·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령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9월 일

고창군 예규 제14호

고창군 상품권 구매·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품권의 구매·사용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수량,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가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에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③ 상품권 관리자 및 회계부서의 장은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로서 직원선호도 조사 등에 따른 경우
2. 정부 시책 등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상품권 사용)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고창군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4.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그 유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고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품권 사용제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하여 사용할 수 없다.

- 1. 명절 등에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 2. 사업홍보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제7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구입일자·구매목적·구매처 및 결제방법·예산과목·구매수량·구매금액, 배부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 또는 배부한 경우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수령한 사람이 관리대장에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사용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9조(관리감독)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구매·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상품권 종류, 용도, 수량, 총 구매액, 사용내역 등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제7조 관련)

연 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일 자	상 품 권 종 류	구 매 목 적	구 매 처	결 재 방 법	예 산 과 목	구 매 수 량	구 매 금 액	일 자	목 적 (내 용)	지 급 수 량	(중간)수령인		중 간 수 령 유 사	결재	
												부 서	성 명 (자 필 서 명)		담 당	부 서 장

고창군 고시 제2023-140호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063-560-8914) 및 건설도시과(☎063-560-25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23년 9월 일

■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결정 조서

1.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체육 시설	공설 운동장	고창읍 월암리 316일원	254,825	-	254,825	고창군 고시 제1998-146호 (1998.07.08.)	

2.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경미한 변경”

가. 총괄표

구 분	세 부 시 설 명		부지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254,825	-	254,825	100.0	
운동시설 용지	주경기장 외 12개 시설	주경기장 외 12개 시설	118,230	-	118,230	46.4	
공공시설 용지	도로, 주차장, 진입광장, 화장실	도로, 주차장, 진입광장, 화장실	79,429	-	79,429	31.2	
관리시설 용지	창고, 테니스장사무실	창고, 테니스장사무실	1,030	-	1,030	0.4	
기타시설 용지	청소년수련관 및 농구장	청소년수련관 및 농구장	5,950	-	5,950	2.3	
녹지용지	복원녹지	복원녹지	50,186	-	50,186	19.7	

나. 세부 시설계획 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건축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440	증) 280	19,720	26,840	증) 280	27,120		
운동 시설 용지	소계	16,530	증) 140	16,670	20,830	증) 140	20,970	건폐율 9.4%, 용적률 10.5%	
	1	주경기장	5,490	-	5,490	5,840	-	5,840	
	2	보조경기장	-	-	-	-	-	-	
	3	테니스장	-	-	-	-	-	-	
	4	씨름장	380	-	380	380	-	380	
	5	축 구 장	200	-	200	250	-	250	
	6	야 구 장	500	-	500	600	-	600	
	7	파크골프장	-	-	-	-	-	-	
	8	전용구장	2,500	-	2,500	2,500	-	2,500	
	9	공도장	360	증)140	500	360	증)140	500	
	10	실내체육관	5,100	-	5,100	7,500	-	7,500	
	11	실내야구장	700	-	700	700	-	700	
	12	휴게소	200	-	200	200	-	200	
	13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1,100	-	1,100	2,500	-	2,500	
14	다목적구장	-	-	-	-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400	-	400	400	-	400		
	15	도로	-	-	-	-	-	-	
	16	주차장(1)	-	-	-	-	-	-	
	17	주차장(2)	-	-	-	-	-	-	
	18	주차장(3)	-	-	-	-	-	-	
	19	주차장(4)	-	-	-	-	-	-	
	20	주차장(5)	-	-	-	-	-	-	
	21	주차장(6)	-	-	-	-	-	-	
	22	주차장(7)	-	-	-	-	-	-	
	23	주차장(8)	-	-	-	-	-	-	
	24	진입광장	-	-	-	-	-	-	
	25	보행자도로	-	-	-	-	-	-	
	26	화장실(1)	90	-	90	90	-	90	
	27	화장실(2)	110	-	110	110	-	110	
	28	화장실 및 샤워장1	100	-	100	100	-	100	
	29	화장실 및 샤워장2	100	-	100	100	-	100	
30	잔디광장	-	-	-	-	-	-		
관리 시설 용지	소계	410	증) 140	550	400	-	400		
	31	창고	200	-	200	200	-	200	
	32	테니스장 사무실	60	증) 140	200	60	증) 140	200	
33	축구장관리동	150	-	150	150	-	150		
기타 시설 용지	소계	2,100	-	2,100	5,200	-	5,200		
	34	청소년수련관 및 농구장	2,100	-	2,100	5,200	-	5,200	청소년 수련관, 식당, 기숙사
녹지 용지	소계	-	-	-	-	-	-		
	35	복원녹지	-	-	-	-	-	-	

3.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시설명	시설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운동장 (공설 운동장)	운동 시설 용지	“변경” • 궁도장	• 쾌적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궁도장 면적 변경	
	관리 시설 용지	“변경” • 테니스장사무실	• 쾌적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테니스장 사무실 면적 변경	

4. 관련도서 및 세부조성계획 : “실음생략”

고창군 공고 제2023-1795호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고창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창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의 목적(안 제1조)
- 입점자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2조 ~ 안 제3조)
- 수수료 (안 제4조)
- 제제 및 지원 (안 제5조)

3. 의견제출

-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 10. 11. 수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 (고창군청 농촌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할 곳 : (우)5644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5

농산물유통센터 1층 고창마켓사업팀

☎ 전화 063-560-2704 / FAX 063-560-25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이메일(jiyoon0126@korea.kr)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고창마켓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560-2704)

고창군 시행규칙 제 호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점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점자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입점 허가와 동시에 입점자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입점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논의
2.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입점자협의회 임원 구성 및 임기) ① 입점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입점자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재무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입점자협의회 회장은 입점자협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입점자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에스크로서비스(안전거래 등) 수수료
2.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가상계좌 수수료
3.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따른 운영 수수료
4. 군은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 사항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5조(제재 및 지원)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재 및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공고 제2023 - 1808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고 창 군 수

1.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산물을 활용하는 유통업체 또는 가공 기업을 유치하고자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건물, 기계기구, 토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 이에 따라,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농촌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695, Fax 063-560-252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063-560-2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 . .

제 출 장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농촌활력과장

1. 제안이유

-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산물을 활용하는 유통업체 또는 가공 기업을 유치하고자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건물, 기계기구, 토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라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입법예고(2023. 00. 00. ~ 2023. 00. 00.) 결과 : 의견없음

4. 따로붙임

-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